제 1 주제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손 영 준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I. 서 론

영상물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시대이다. 언론환경은 '읽는' 매체 시대에서 '보는' 매체 시대로 변했다. '읽는' 매체 시대에서는 원고지와 볼펜만 있으면 됐다. 그러나 '보는' 매체 시대에는 영상이 중요하다. 그럴듯한 사진과 화면으로 독자와 시청자, 네티즌의 시선을 한순간에 사로잡아야 한다. 요즘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독자와 시청자의 눈을 끌 수 있는 '스토리(story)'가 있는 '실감나는' 사진이나 화면을 좋아한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대충 찍지 않는다. 그 사람 얼굴 사진을 통해 어떤 분명한 메시지(message)가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언론인들이 사진이나 화면 같은 영상물을 보도함에 있어서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상을 - 그것도 적시에 -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실감나는' 영상물을 그것도 '손쉽게' 구하려다보니, 사람들의 초상이나 용모를 보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영상물

을 보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의 문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예를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일자 신문 1면[1]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며 한 젊은이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진의 주인공은 그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정정 보도를 냈다. 잘못된 보도라며 사과를 했다. 그 젊은이는 흉악범 피의자로 지목돼 신문 1면에 실린 본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 오보 소식을 듣고 "미칠 지경이었다"는 그 젊은이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2] 그 젊은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를 포함해 많은 신문들은 다음날 피의자 고모씨 사진을 일제히 게재했다. 이번에는 오보가 아니었다. 피의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언론사가 보도한 피의자 사진은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어떤 신문사는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진을 실었으며, 어떤 신문사는 자세히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차이는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의자가 누군지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운 사진을 실은 언론사는 초상권이 범죄피의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 아닌 형사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충족시키고 유사 범죄의 예방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어떤 법률적 판단을 제시할 재간이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공분(公憤)에 찬 여론의 압력을 내세워 피의자 초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법치(法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여론의 향배에 따라 사진 공개여부를 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방식인지도 의문이다. 피의자 상태에서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

1)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2) 노컷뉴스 2012년 9월 1일자, "무고한 시민 얼굴을 고종석으로... 조선일보 대형오보"

다면, 피의자를 공인(公人)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피의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얼굴 공개는 언론 윤리문제에 해당된다.[3] 사인(私人)의 초상을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공적 이익의 확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목적이 숭고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정의로운 것이며 또 합리화될 수 있는가? 나주 피의자 얼굴 공개를 둘러싼 오보 해프닝과 뒤이은 후속 보도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권리이다.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동의 없이 촬영돼 공표되지 아니하고(문재완, 2008; 유일상, 2000)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박경신, 2008)이다. 초상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과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에 의거해 정당한 인격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4]

초상권 침해는 그림이나 광고, 서적 등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유

---

3) 우리 언론은 흉악범 얼굴이나 이름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각 언론사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사건의 비중과 여론의 반응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관련 규정(신문윤리강령 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20조 '명예훼손의 금지', 23조 '형사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등)도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원론적 준칙을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판단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때 일부 언론이 '알 권리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public interest)을 명분으로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작했다. 몇 몇 언론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사인(私人)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언론사간의 보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신문 방송이 흉악범의 경우에는 초상을 공개하는 추세이다.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성폭행 사건 언론사별 보도준칙 만들어야."

4)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는 다음의 두 가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기초한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이다. 언론은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정책 집행, 공적 이익과 관련된 활동,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슈 등이 뉴스 가치(news value)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재대상에게 게재여부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보도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개인(私人)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알 권리의 범위에 대해 가급적 확대 해석하는 경향인데 반해, 법원의 판단은 알 권리의 범위와 대상을 상대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개인 매체 이용이 활발해지고 또 영상매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허락받지 않고 -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블로그나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물이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5)]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공적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18조 2항에서,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글은 초상권의 1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사례를 통해, 언론기관에 의한 초상권 침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언론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로어가 148만 명이라는 '트위터대통령' 소설가 이외수씨가 다른 사람의 영상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그의 초상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트위터라는 개인간 미디어를 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중을 상대로 한 언론행위(mass communication)의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Ⅱ.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중재 현황 및 특징

1. 전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이나 신문, 통신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조정

언론중재위는 법정기구로 설립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1년 동안 모두 18,220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했다.[6]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초상권이나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조정이 처리된 2005년 이후 조정사건 9,869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9,165건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명예훼손 사건을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조정이 349건(3.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 해 평균 49.8건 정도의 초상권 침해 청구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는 15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48건, 2007년 53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2008년에 29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56건, 10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인터넷 포털 뉴스가 2009년부터 조정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지난해 2011년에는 다시 39건으로 줄어들었다.

---

6)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연간보고서, 2006년 연간보고서, 2007년 연간보고서, 2008년 연간보고서, 2009년 연간보고서, 2010년 연간보고서, 2011년 연간보고서, <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

<표 1> 연도별 침해 유형별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명예훼손	827 (93.7)	1,004 (92.4)	953 (91.4)	899 (94.2)	1,457 (92.6)	1,995 (90.5)	2,030 (95.6)	9,165 (92.9)
초상권 침해	15 (1.7)	48 (4.4)	53 (5.1)	29 (3.0)	56 (3.6)	109 (4.9)	39 (1.8)	349 (3.5)
신용훼손	23 (2.6)	17 (1.6)	2 (0.2)	6 (0.6)	6 (0.4)	20 (0.9)	8 (0.4)	82 (0.8)
성명권 침해	14 (1.6)	1 (0.1)	3 (0.3)	4 (0.4)	1 (0.1)	4 (0.2)	22 (1.0)	49 (0.5)
음성권 침해	2 (0.2)	7 (0.6)	12 (1.2)	10 (1.0)	5 (0.3)	3 (0.1)	-	39 (0.4)
프라이버시 침해	-	4 (0.4)	11 (1.1)	3 (0.3)	18 (1.1)	20 (0.9)	24 (1.1)	80 (0.8)
기타	2 (0.2)	6 (0.6)	9 (0.9)	3 (0.3)	30 (1.9)	54 (2.4)	1 (0.0)	105 (1.1)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9,869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표 1>의 초상권 침해 조정 현황에 나타난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 조정사건에서 초상권 침해 청구 비율(3.5%)이 상대적으로 낮다. 명예훼손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를 언론보도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지 않다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심리에서 초상권 관련 사항이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청구 사건의 특성이 초상권 침해를 포함해 복합적 성격을 띨 경우에 피해자들이 조정과 중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건의 주된 피해 유형을 명예훼손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권리가 복합적·다면적 성격을 갖는 경우, 포괄적 권리 침해인 명예훼손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7년간 초상권 침해로 청구된 349건은 그 사안의 주된 침해가 명백하게 초상권에 해당되는 경우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둘째, 초상권 청구가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에 대폭 감소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초상권과 관련해, 언론계 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언론사나 언론인 측면에서 보면, 메이저 언론사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가능성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초상권 침해를 고려해, 사람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다. 물론 공중파TV나 메이저 신문에서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언론사간의 영상특종 경쟁이 치열하고 또 단순한 과실 등의 이유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생 인터넷 언론 가운데는 초상권에 대한 편집상의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중재

2005년에 중재 기능이 도입된 후[7] 201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중재사건은 모두 332건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연도별 침해 유형별 중재 현황에 따르면, 중재의 경우에도 조정 심리와 비슷하게 전체 침해 사건의 88.6%가 명예훼손사건이다. 초상권 침해 사례는 전체 중재건수의 9.3%로 나타나 조정(3.5%)보다는 비율이 높다.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7)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 도입 때부터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조정' 역할이 훨씬 많다.

〈표 2〉 연도별 침해 유형별 중재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명예훼손		3 (42.9)		4 (40.0)	99 (89.2)	76 (98.7)	112 (99.1)	294 (88.6)
초상권		3 (42.9)	12 (85.7)	5 (50.0)	10 (9.0)		1 (0.9)	31 (9.3)
신용훼손								
성명권		1 (14.3)						1 (0.3)
음성권				1 (10.0)	2 (1.8)			3 (0.9)
프라이버시			2 (14.3)					2 (0.6)
기타						1 (1.3)		1 (0.3)
사건 수	0 (100.0)	7 (100.0)	14 (100.0)	10 (100.0)	111 (100.0)	77 (100.0)	113 (100.0)	332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2.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의 세부 현황

초상권 침해 청구사건의 특징을 1) 초상권 침해 유형, 2) 청구 유형, 3) 손해배상 조정액, 4) 매체 유형, 5) 처리결과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1) 초상권 침해 유형

초상권이 침해되는 유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사용한 경우, 타인이 제공한 초상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다른 매체가 게재한 초상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본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지만 그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보관중인 자료사진이나 영상파일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승선, 김연식, 2009).

8) 언론중재의 경우 전체 건수가 31건에 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초상권 침해 조정 사건 가운데 68.5%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이다. 전체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사건 수는 적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의는 받았지만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초상권 청구는 전체의 22.2%를 차지한다. 이 유형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3> 초상권 침해 유형(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44(83.0)	26(89.7)	37(66.1)	63(57.8)	170(68.5)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	7(13.2)	2(6.9)	10(17.9)	36(33.0)	55(22.2)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9(14.3)	2(1.8)	11(4.4)
기타	2(3.8)	1(3.4)	1(1.8)	8(7.3)	12(4.8)
합계	53(100.0)	29(100.0)	56(100.0)	109(100.0)	248(100.0)

* 2007년 이전과 2011년은 분석하지 못하였음.

2) 청구 유형별 초상권 조정 현황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초상권 침해로 조정된 349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는 305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정정보도가 신청된 경우는 11.5%(40건)였으며, 반론보도는 1.1%(4건)에 불과했다.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과 관련해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05년의 경우에는 53%에 그쳤지만, 2006년부터는 90% 안팎의 손해배상청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전체 조정 건수 가운데 92.3%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피해자들이 초상권 침해 구제방안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정정보도 신청의 경우 2005년 전체 조정 건수의 26.7%에 달했

지만 점차 감소해 2011년에는 7.7%에 그쳤다.

<표 4>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정정보도	4 (26.7)	6 (12.5)	5 (9.4)	5 (17.2)	5 (8.9)	12 (11.0)	3 (7.7)	40 (11.5)
반론보도	3 (20.0)		1 (1.9)					4 (1.1)
손해배상	8 (53.3)	42 (87.5)	47 (88.7)	24 (82.8)	51 (91.1)	97 (89.0)	36 (92.3)	305 (87.4)
계 (%)	15 (100.0)	48 (100.0)	53 (100.0)	29 (100.0)	56 (100.0)	109 (100.0)	39 (100.0)	349 (100.0)

손해배상이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권리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5>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청구비율을 나타낸다. 손해배상청구비율은 전체 조정 건수 대비 손해배상청구 건수이다. 음성권 침해의 경우가 89.7%로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가장 높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87.5%, 초상권 침해가 87.4%, 성명권 침해가 79.6%로 나타났다. 초상권은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과 함께, 권리 구제 방안으로 손해배상이 많이 활용되는 인격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명예훼손은 전체 조정 9,165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가 31.7%에 그쳤으며, 신용훼손도 전체 82건 가운데 20건(24.4%)밖에 되지 않았다.

〈표 5〉 조정 청구 유형별 손해배상청구 비율

	2005년~2011년 전체 조정 건수	2005년~2011년 손해배상청구 건수	손해배상청구 비율(%)
명예훼손	9,165	2,906	31.7
초상권 침해	349	305	**87.4**
신용훼손	82	20	24.4
성명권 침해	49	39	**79.6**
음성권 침해	39	35	**89.7**
프라이버시 침해	80	70	**87.5**
기타	105	31	29.5
계	9,869	3,406	34.5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3) 손해배상 조정액별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현황

〈표 6〉은 초상권 침해 청구가 손해배상을 통해 조정된 경우의 조정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7.5%로 가장 많았으며, '101만 원~200만 원'과 '201만 원~300만 원'은 각각 24.6%, 16.4%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301만 원~400만 원'은 3.3%, '401만 원~500만 원'은 4.9%, 그리고 '501만 원 이상'은 3.3%에 불과했다.

손해배상을 통해 조정이 된 경우에, 전체의 88.5%의 사례에서 조정액이 300만 원 이하였다. 이 정도 수준의 조정액이 초상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금액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9)]

9)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심리는 법원에 비해 손해배상 합의 비율이 낮고 또 손해배상 금액도 적다는 특징이 있다(언론중재위 보도자료, 2011, 7. 22). 즉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실제 이뤄진 사건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12.7%, 2009년 7.2%, 2010년 5.6%에 그쳤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각각 52.1%, 47.0%, 26.8%로 조사됐다. 또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손해배상 금액(평균값)은 언론중재위의 경우 2008년 333만원, 2009년 359만원, 2010년 274만원이었으며, 법원의 인용액은 각각 2,340만원, 2,348만원, 2,424만원이었다.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건당 손해배상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14.2%(2008년), 15.2%(2009년), 11.3%(2010년) 수준에 해당한다.

〈표 6〉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조정액(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00만원 이하		13(59.1)			4(30.8)	12(75)	29(47.5)
101~200만원		6(27.3)	3(50.0)	2(50.0)	3(23.1)	1(6.3)	15(24.6)
201~300만원		2(9.1)		2(50.0)	3(23.1)	3(18.8)	10(16.4)
301~400만원		1(4.5)			1(7.7)		2(3.3)
401~500만원			1(16.7)		2(15.4)		3(4.9)
501만원 이상			2(33.3)				2(3.3)
합 계	0(100.0)	22(100.0)	6(100.0)	4(100.0)	13(100.0)	16(100.0)	61(100.0)

* 2011년은 자료 미비로 집계되지 못했음

4) 매체 유형별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현황

〈표 7〉은 초상권 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방송이 전체의 39.0%로 초상권 조정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4.1%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은 각각 12.9%와 12.0%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부터 언론중재위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초상권 조정 사례 수는 방송 다음으로 많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신문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조정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표 7〉 매체 유형별 초상권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일간신문	1(6.7)	15(31.3)	10(18.9)	4(13.8)	5(8.9)	7(6.4)	3(7.7)	45(12.9)
주간신문		4(8.3)	5(9.4)	2(6.9)	1(1.8)	2(1.8)		14(4.0)
방송	10(66.7)	21(43.8)	27(50.9)	14(48.3)	29(51.8)	14(12.8)	21(53.8)	136(39.0)
케이블TV	5(33.3)							5(1.4)
잡지		5(10.4)	1(1.9)		3(5.4)			9(2.6)
뉴스통신		1(2.1)	6(11.3)	3(10.3)		2(1.8)	1(2.6)	13(3.7)
인터넷신문		2(4.2)	4(7.5)	5(17.2)	7(12.5)	19(17.4)	5(12.8)	42(12.0)
인터넷뉴스서비스					11(19.6)	65(59.6)	8(20.5)	84(24.1)
기타				1(3.4)			1(2.6)	2(0.6)
계 (%)	15 (100.0)	48 (100.0)	53 (100.0)	29 (100.0)	56 (100.0)	109 (100.0)	39 (100.0)	349 (100.0)

*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부터 조정대상이 됨

5) 초상권 침해관련 처리 결과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초상권 침해 조정은 신청인 취하로 해결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33.8%로 전체 청구 가운데 1/3 정도를 차지했다. 조정성립 비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권으로 조정이 결정된 경우와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는 각각 7.4%에 달했다. 기각된 경우도 5.4%를 차지했다. 기각은 주로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이뤄진 것이다.

초상권 침해 처리 결과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가 많다는 것이다. 〈표 8〉을 보면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가 160건인데, 이 중 76.9%에 달하는 123건(표에서 [ ]로 표시된 부분)은 신청인이 언론기관과 합의를 한 뒤 자발적으로 취하한 것이다. 합의 후 취하는 대개 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측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 기사게재,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약속받거나

피해구제방안이 이행돼 조정신청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하를 했지만 사실상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전체 취하 160건 중 23.1%인 37건)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합의 후 취하는 사실상 조정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처리결과 유형별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조정성립	3 (20.0)	27 (56.3)	21 (39.6)	11 (37.9)	20 (35.7)	27 (24.8)	9 (23.1)	118 (33.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6.7)	9 (18.8)	5 (9.4)	1 (3.4)	5 (8.9)	1 (0.9)	4 (10.3)	26 (7.4)
조정 불성립결정	1 (6.7)	5 (10.4)	2 (3.8)	3 (10.3)	2 (3.6)	10 (9.2)	3 (7.7)	26 (7.4)
기각	3 (20.0)			1 (3.4)		12 (11.0)	3 (7.7)	19 (5.4)
취하	7 [5] (46.7)	7 [3] (14.6)	25 [11] (47.2)	13 [10] (44.8)	29 [25] (51.8)	59 [54] (54.1)	20 [15] (51.3)	160 [123] (45.8)
계	15 (100.0)	48 (100.0)	53 (100.0)	29 (100.0)	56 (100.0)	109 (100.0)	39 (100.0)	349 (100.0)

* [ ] 안의 숫자는 심리 이전이나 진행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피해구제(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합의하거나 구제가 이뤄져 신청을 취하한 건수임

Ⅲ.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중재 사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발생한 7건의 케이스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1)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도된 경우, 2) 본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된 경우, 3)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이용된 경우로 나눠서 살펴본다.

1.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1) 2011서울조정893 손배청구: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

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2011년 7월 서울시 강남구청 미혼남녀 미팅 행사를 보도하면서 여성 A씨의 초상과 음성을 모자이크 없이 방영했다. 방송 후 A씨는 "도시의 풍토병이 돼 버린 노처녀들"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돼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허락 없이 초상과 음성을 보도했으며, 또 자신이 소개팅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0서울조정1590 손배청구: 휘발유 값 폭등 관련 사진에 주유원의 초상을 동의 없이 실어 피해를 입었다.

○○신문은 2010년 12월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유소에서 주유업무를 하던 신청인 B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계약사에 전송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으며, 사진이 이를 전송받은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되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후, ○○신문은 B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고, B씨는 조정을 취하했다.

3) 2011서울조정1115 손배청구: TV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인터넷 비난글을 기사화 하면서 당사자 사진을 실었다.

직장인 여성 C씨는 ○○○(방송)가 2011년 주최한 남녀단체미팅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또래 남녀 출연자와 어울리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TV 프로그램을 본 누군가가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녀의 사적인 남녀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이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는 이런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C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C씨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액 150만 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C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외에도 이 사건을 보도한 다른 인터넷 언론사 6개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각각 조정이 이뤄졌다.

2. 본인의 동의를 벗어나 초상이 보도된 경우

1) 2011서울조정1031 손배청구: 카드사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카드회사 리볼빙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청인 D씨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방송 후 D씨는 음

성만 노출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모자이크 되지 않은 얼굴과 함께 실명, 나이, 영업장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1서울조정697 손배청구: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2011년 서울 은평 뉴타운 부실공사 보도에서, 아파트 거주민 E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E씨는 보도할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인터뷰 장면도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중재부는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신청인이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3.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이용된 경우

1) 2011서울조정658, 659 정정, 손배청구: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송)는 2011년 5월 보도에서 20만 원이면 결혼 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알뜰 결혼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혼인 예복을 입고 촬영한 신청인 F씨의 초상을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신청인은 방송에서 소개된 알뜰 결혼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신청인의 화면을 방송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싸구려 결혼식을 했냐는 문의를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는 결정에 동의했다.

2) 2010대구조정2 손배청구: 대게 불법 포획 기사를 보도하면서 2년 전 촬영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송)는 2010년 동해안 대게자원의 고갈원인이 불법 어획 때문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어업지도선이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냈다. 그 자료화면은 2008년 촬영된 것이었다. 방송 후 화면에 얼굴이 잡힌 선원 G씨는 2008년 불법조업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2년 뒤 그 화면이 또 다시 방송되어 초상권침해를 받았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심리결과, 방송사가 피신청인에게 2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초상권 침해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9,869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92.9%를 차지하며, 초상권 침해 청구는 349건으로 3.5%에 불과하다. 초상권 청구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초상권과 다른 권리가 복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를 통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법적 이슈이다.

②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은 한 해 평균 49.8건 꼴로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인터넷 포털 기사가 조정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초상권 조정 사례가 2009년, 2010년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언론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방송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은 초상권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초상권 침해의 68.5%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였다. 동의는 받았지만, 당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는 22.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자료화면 등을 통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다.

④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가 8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정보도가 신청된 경우는 11.5%였으며, 반론보도는 1.1%에 불과했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피해 구제방안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손해배상이 활용되는 비율을 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과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 청구 조정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80~90%를 차지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는 그 비율이 31.7%에 불과했고 신용훼손의 경우에도 24.4%에 그쳤다.

⑥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조정액은 전체 손해배상 조정의 88.5%가 배상액 300만원 이하에서 정해졌다. 이 정도의 금액이 피해 구제에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⑦ 초상권 조정 사례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방송이 39.0%로 가장 많고 인터넷뉴스서비스가 24.1%로 그 다음이다.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은 각각 12.9%와 12.0%를 차지했다. 신문의 초상권 침해 조정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⑧ 처리결과별 조정 현황은 신청인 취하가 45.8%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은 33.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조정 불성립은 각각 7.4%였다. 취하 사건 가운데 3/4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취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 기사게재,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약속받거나 피해구제방안이 이행됐을 경우이다. 취하의 경우에 합의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와 아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⑨ 초상권 관련 조정 사례 7건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단순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초상권 보호와 관련해 어떤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는 초상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⑩ 언론인, 언론 관행, 언론제도 및 언론환경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인의 문제. 우리 언론인들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도제식으로 배운다. 언론인 훈련 과정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취재보도와 관련한 기초 법지식이 취약하다. 대학의 언론정보학과 등에서 언론법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전공 수업은 입사 후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기자로 뽑히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초상권 같은 문제는 저널리스트가 된 다음에 현장에서 부딪치며 배우는 것이 우리의 언론 현실이다. 취재보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연수나 강의 기회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언론 관행의 문제. 언론 관행은 언론인들이 저널리즘과 관련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준거기준이 된다. 초상권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그동안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동료나 타사 기자도 다 이렇게 하는데 큰 문제 있을까”하는 관행이 작동하고 있다. 뉴스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거두절미하고 보도한다. 어떤 사물과 이슈가 갖는 복잡한 특성도 고려하겠지만, 가급적 업계 내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단순화 시켜 관성적으로 보도한다. 세상은 21세기로 넘어온 지 오래됐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언론의 취재 제작 관행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행은 보수나 진보 언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또 방송도 신문에 못지 않다.

셋째, 언론 제도・환경의 문제(언론 매체의 증가, 언론의 경영상 압박, 시민의 권리의식 강화).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으로 언론 매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단편적이고 감성적인 영상물도 많아지고 있다. 초상권 같은 저널리즘의 ABC를 진지하게 고민할 겨를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뉴스 정보가 너무 많다보니, 저널리즘 원칙을 지킨 뉴스가 시장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한다. 예전만 못해졌다. 매체의 증가는 개별 언론사에게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경영상 압박은 제작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또 저널리스트를 ‘저널리즘 원리를 이해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경영 압박을 받는 언론사일수록 언론인의 문제, 언론 관행의 문제를 찬찬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 과거 뉴스 소비자였던 일반 시민들은 권리의식을 강화해 더 엄격한 잣대로 언론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인의 문제, 언론 관행의 문제, 언론 제도·환경의 문제는 상호 부정적인 부머랭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품격 있는 저널리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⑪ 다시 서론에서 논의한 나주 성폭행 사건 보도로 돌아가 보자. 오보로 판명난 최초의 그 젊은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라면 명백한 오보이기에 적절한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의자 고모씨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만의 하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심리를 요청해 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참고문헌>

문재완 (2008). 언론법. 서울: 늘봄

박경신 (2008). "순수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가치인가, 규범인가". 「창작과 권리」 51, p.4

유일상 (2000). 언론법제론, 박영사

이승선, 김연식 (2009).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 pp.65~94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성폭행 사건 언론사별 보도준칙 만들어야”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노컷뉴스 2012년 9월 1일자, “무고한 시민 얼굴을 고종석으로... 조선일보 대형오보”

제1주제 지정토론

■ 한은경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사건이 1991년 11월 뉴스위크지에 실린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지에 '돈의 노예: 이화여대생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5명의 여대생 모습이 실렸습니다. 사실 5명의 여대생들이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장을 한 것인데, 이것을 놓고 한국의 과소비 문화라고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에서 뉴스위크에게 6천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진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페이스북에 하루 70억장의 사진이 올라오고, 프라이버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문제가 제기되니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과 기자가 찍어서 올리는 사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덴티티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비주얼 아이덴티티인데, 이 아이덴티티는 개인이 정할 수도 있고, 기자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자가 이 아이덴티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 알권리, 언론이 알릴 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권을 더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않는 초상권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인의 경우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과 일반인의 기준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디스패치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정용진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1,500만 원의 손배를 판결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해배상 처리한 이 사건을 보고 공인과 일반인의 기준을 어떤 범위 내에 둬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서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의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고, 종편 이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전문기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계약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초상권의 문제가 앞으로 더욱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조직적인 문제, 재원의 문제 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손영준 교수님께서 언론인 재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문제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입사한 지 18년이 됐지만 재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것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군다나 2000년 이전 필름을 쓰던 시절, 거의 인터넷이 안 되던 언론환경에서는 초상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배들의 도제식 교육의 바탕이 사실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에 난 자기 사진을 보고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해도 '아니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2005년 조정, 중재를 시작한 이후로 초상권에 대해 언론사, 신문사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어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

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스크가 매번 언론중재위에 나가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생각과는 다른 중재금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 현장에 나가는 일선 취재기자들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있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신문에만 저희 사진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인터넷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전송이 돼서 그 사진들이 신문에 쓰이던 안 쓰이던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초상권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초상권 문제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오신 부장들 입장에서는 일선기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당한 그림을 만들어오길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초상권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짧은 시간 안에 찍고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악순환이 되다보니 현장기자는 나름 억울한 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초상권 문제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는 언론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중재위에 갔다 오신 여러 신문 사진부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갔다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초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했는데, 어떤 경중을 논하기 전에 신청이 있으면 일단 중재를 권고하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성대 축제현장에 취재간 적이 있습니다. 성대에서 축제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기자가 성대 홍보실 직원과 함께 축제현장에 가서 마이크를 가지고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에서 취재를 와있고 취재된 사진이 네이버 등에 실릴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현장에는 50~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펀치볼 게임을 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전송했는데 공교롭게도 펀치볼 치던 여학생의 머리가 흩날리면서 좀 여성적이지 않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갔다 왔는데, 사실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축제하면 흥겹고, 힘 있고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신문에 실릴 것을 예상했는데 중재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여자의 얼굴이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 시각의 차이가 매번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스케치를 나가서 두꺼운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가급적 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태풍스케치를 나가서 저희는 사람이 떠밀려나가는 정도의 바람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에 중점을 두고 찍은 사진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중재위원님들의 시각은 바람을 보지 않고 밀려가는 사람의 표정을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초상권에 대해 이해하려 해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중재위원님들이 보통의 경우'이 정도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가야되는데 민사로 가면 기본적으로 0이 하나 더 붙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민사로 가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부장이 불려다니고, 당사자가 불려다니고, 편집국장까지 불려다니는 것보다 적게는 30~40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에서 해결보고 말지 하는 식의 자괴감 어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초상권 자체가 정식으로 보호받고 언론사에 의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되려면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재금액이 30만 원 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경우에는 200만 원이 나오고 하는 식의 차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별로 보면 개인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아무리 봐도 표정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자기가 신문에 공표되는 게 싫다거나 누가 봐도 얼굴도 제대로 안보일 정도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젊은 기자일수록 예전의 선배들보다는'초상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해진 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인위적으로 정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의 경우 2009년 6월에 6·10항쟁 기념 몇 주년일 때 집회현장인 서울광장에서 어떤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200만원으로 합의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집회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갔습니다. 민사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인근에 직장이 있고, 퇴근하는 길에 어쩌다보니 휩쓸렸고, 내가 갈 길 가려는데 경찰이 막아서 항의하는 과정에 순간 포착된 사진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집회에 참가했었고 그 전에도 집시법 위반혐의로 잠깐 구류를 산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소위 '시위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동아일보가 승소했습니다. 전 아주 좋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집회현장에서의 초상권이 과연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언론재단에서 초상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진기자는 저 뿐이었습니다. 2시간씩 이틀에 걸쳐 총 4시간을 했는데, 강사 중의 한 분은 전 중재위원이셨던 변호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현 중재위원이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나마 현 중재위원이신 변호사님은 방송기자 출신이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중재위원이셨던 그 분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에게 시청광장에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 입고 응원을 하고 있는 전경을 찍었을 때 그 중에 정말 깨알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다'라고 할 때도 초상권 침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현 중재위원님께서는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을 봐서 그 손해배상액은 1/n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중재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형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재위에 초상권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오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30~40만 원에', '100만 원에', '이건 싼 건 줄 아세요' 식의 생각이 베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대 그 여학생에게 담당부장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냐"고 물었더니 언론중재위에 전화해서 상담해주시는 분께 "얼마정도 신청하면 되요? "했더니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신청하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그 정도 받고 끝날 겁니다'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 이후면 6~7년 정도 된 셈인데 처음 의욕과 달리 초상권 기준의 모호함이 언론사에게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되면 다행이지'하는 생각을 안겨주신 것은 아닌지, 혹은 중재위원 스스로도 딱히 적용시킬 규정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 시각의 차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비주얼한 지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진이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산업이 많이 후퇴하다 보니까 사진기자 신입 사원 채용을 하지 않아 사실 젊은 기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진기자 숫자는 줄어드는데 면수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10년 전에는 하루에 1~2건 하던 것을 요즘은 5~6건을 해야 됩니다. 사진기자는 물리적으로 현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전송하는 시간을 합치면 엄청나게 일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기자들이 조금 더 좋은 앵글이면서도 초상권에 저촉 받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초상권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계속해서 연구, 정리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를 어떻게 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동의 절차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찍었다 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의 절차라는 게 촬영을 하겠다는 동의, 배포를 하겠다는 동의, 배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동의까지 받아야 완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벚꽃 사진 스케치를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너 명만 있어도 '사진 좀 찍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촬영을 허락하는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요즘 젊은 기자들은 초상권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도제식이 아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갔다 왔던'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